

2016년
달라지는
농식품 제도 및 주요 법령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농산업분야의 우수한 청년인력의 창업 초기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농업인력 기반을 확충

* 청년 300명, 최대 2년까지 월80만원 지급

- 창업안정자금 지원 : 최대 2년간 월 80만원 지원
- 청년 창업농 300명 선발을 위한 도별 창업경진대회 개최
- 신규창업농 정보교류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시행일 : 2016년 4월



농촌

창조농업 선도고교 및 농대 영농창업 특성화

미래 농업을 이끌 젊고 유능한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
창조농업 선도고교 및 농대 영농창업 특성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

- 창조농업 선도고교(3개교) :
기존 농업계 고등학교 중 의지와 역량을 가진 학교를 선정하고
현장실습 중심의 농업 직업교육을 실시
- 농대 영농창업 특성화 사업(5개교) :
기존 농대에 현장실습이 강화된 영농창업특별과정을 운영하여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청년 창업농 육성

※ 시행일 : 2016년 7월



농촌

농어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시
농어업인 여부 확인절차 생략
-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어업인의 경우 기존 이·통장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읍·면·동장의 확인으로 간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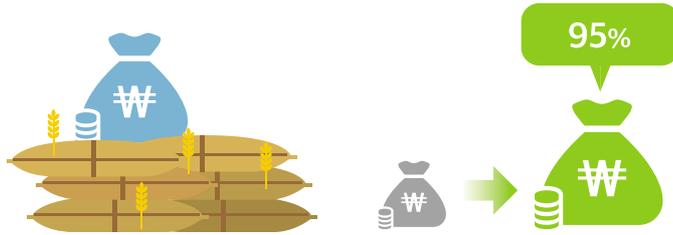
※ 시행일 : 2016년 1월 중

농촌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 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하고, 수입기여도 등 결정 시 농업인의 이익제기 절차를 신설

- 보전비율 상향(90% → 95%)
- 대상품목과 품목별 수입기여도에 대한 농업인의 이익제기 절차 신설



※ 시행일 : 2016년 5~6월(잠정, 개정안 준비중)

농업

신규 취농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지원 신설

2030세대, 창업농, 귀농인 등 취농인*이 농지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

* 취농인 : 신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인 농지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 필지당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지
- 지원상한 : 1,000㎡~1,982㎡ 범위 내
- 임차기간 : 3~5년 범위 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계약

※ 시행일 : 2016년 1월



전·답인 농지
1,000㎡~1,982㎡
범위 내 지원

농업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6년 1월 1일부터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잔액기준 5.3조원)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 용자사업 대출금리 인하 2.5~2.7% → 2.0%

2.5% → 2.0%

농지매입경영화생지원, 농업종합자금, 원예시설현대화, 농지연금, 종축시설현대화, 식품외식종합자금, 도축가공업체지원, 시설원예효율화, 저온유통체계구축, 농식품시설현대화, 말산업육성,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첨단온실신축지원, 사료산업종합자금

2.7% → 2.0%

농촌주택개량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 중 주택구입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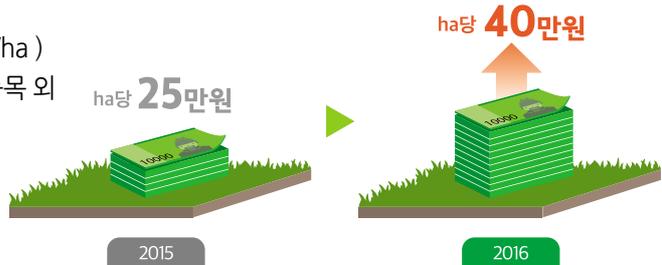
※ 시행일 : 2016년 1월

농업

밭농업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밭농업 고정직불금이 2015년 ha당 25만원에서
2016년부터는 ha당 40만원으로 인상

- 밭고정직불금 단가 인상(25만원/ha → 40만원/ha)
- '15년 밭작물 26개 품목에 40만원/ha, 26개 품목 외 밭작물에 25만원/ha 지급 → 모든 밭작물에 40만원/ha 지급, 기존 논 이모작에 50만원/ha 지급



※ 시행일 : 2016년 1월

농업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16년 1월 7일부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시행

-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장에서의 안전재해 보장 강화
- 보험료의 국고지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보험금의 종류, 보험사업관리, 안전재해예방사업 등 규정



※ 시행일 : 2016년 1월 7일

농업

저소득계층 대상 복지용 쌀 정부양곡 판매가격 인하

'1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20% 인하



- 판매가격 인하 : 기준가격 → 기준가격의 80%

※ 시행일 : 2016년 1월

식량·농자재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 의무화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를 의무화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와 명확히 구분

-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loader, 2톤 미만), 굴삭기(1톤 미만)에 대해 농업용 표시를 하여야 함
- 대상 농업기계에 농업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loader, 2톤 미만), 굴삭기(1톤 미만)에 대해 농업용 표시를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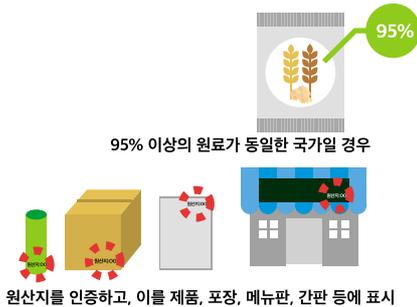
※ 시행일 : 2016년 2월 12일

식량 · 농자재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료원산지 인증제 도입

소비자의 원산지 신뢰도를 높이고,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연계강화를 위한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제도가 시행

- 가공식품 원료의 95% 이상 또는 음식점 등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95% 이상이 동일한 원산지일 경우 인증 절차를 통해 인증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인증서 발급)
- 첨부서류 : 공동서류(원료 구매 조달 실적 서류, 원료의 원산지 증명 서류 등), 가공식품(품목제조보고서), 음식점(주메뉴 및 부식류 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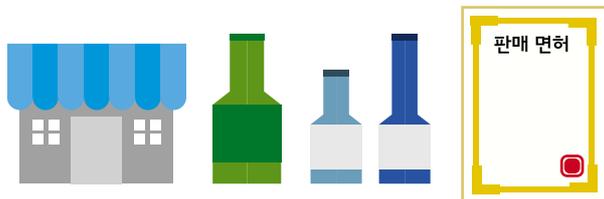
※ 시행일 : 2015년 12월 23일

식품 · 수출

소규모 탁주, 약주, 청주 제조면허 신설

소규모의 제조시설을 갖춘 음식점에서 직접 제조한
탁주, 약주, 청주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면허가 신설

- 대상 주종 : 탁주, 약주, 청주
- 판매 범위 : 자기 영업장 및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
- 시설 기준 : 담금(발효)·제성조 1kl 이상 5kl 미만



※ 시행일 : 2016년 2월 1일(잠정)

식품 · 수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상 확대

축산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등록대상을 '16년 2월 23일부터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 2016년 2월 23일부터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가축사육면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축종	<'15. 2. 22 이전> ~전업규모까지	<'15. 2. 23 이후> ~준전업규모까지	<'16. 2. 23 이후> ~소규모까지
소	600㎡ 초과	300㎡ 초과	50㎡ 초과
돼지	1,000㎡ 초과	500㎡ 초과	50㎡ 초과
닭	1,400㎡ 초과	950㎡ 초과	50㎡ 초과
오리	1,300㎡ 초과	800㎡ 초과	50㎡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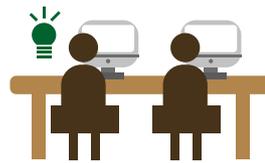
※ 시행일 : 2016년 2월 23일

축산·동물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축산관련 종사자들의 편의 제공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 교육프로그램'이 상용화

'16년 1월 1일부터 상용화



- 기존 집합 교육 정보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구현
-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을 통한 상시 교육이 가능하도록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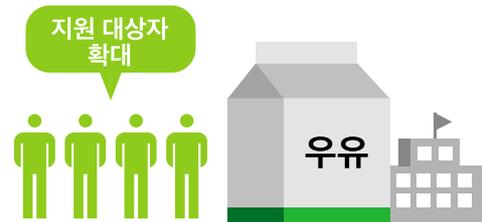
※ 시행일 : 2016년 1월

축산·동물

학교 우유급식 지원 대상 확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학교 우유급식 초·중교 지원 대상자 확대

- (당초)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기타 시도에서 선정한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교생 →
- (2016년 추가) 초·중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지원



※ 시행일 : 2016년 1월

축산·동물

동물장묘업 등록기준 등 개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용받던 동물장묘업이 '16년부터는 「동물보호법」에 등록기준이 신설되어 적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폐지
- 동물화장시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검사 제외
- 동물건조장시설 정기검사 주기 완화(3개월 1회 → 6개월 1회)



※ 시행일 : 2016년 1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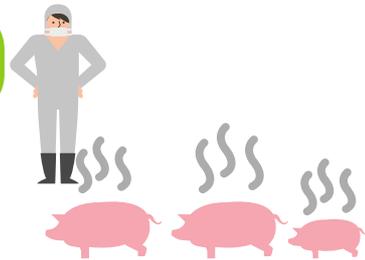
축산·동물

광역축산 악취 환경 개선 지원

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6년부터 광역축산 악취 환경개선 사업이 시행

- 광역축산악취환경개선 : 40억원 내외/3개소(시·도)
- 지자체는 가축분뇨의 공동처리 의무, (1순위) 악취저감, (2순위) 퇴액비, (3순위)정화조 개보수, (4순위) 액비저장조, (5순위) 기계·장비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음

악취저감 분뇨 효율적 처리



※ 시행일 : 2016년 1월

축산·동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6년 6월부터 제정·시행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행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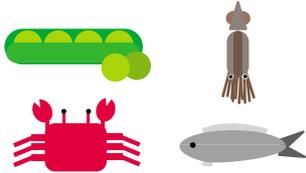


※ 시행일 : 2016년 6월 23일

유통·소비·생명산업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16년 1월부터 개정·시행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총 20개)

음식점 표시대상품목 추가



2 ▶ 3개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 수 확대

-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배합비율에 따라 3순위 원료까지 표시
-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 추가: 콩(두부, 콩국수, 콩비지로 제공시), 오징어, 꽃게, 참조기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조리용도 확대: 쌀(밥 → 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축산물·수산물(특정 조리용도 → 모든 조리용도)
- 음식점의 원산지표시판 게시위치 명확화(잘 보이는 곳 → 주출입구 정면)
-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변경이 빈번한 경우 예외표시인 “수입산”을 ‘외국산(국가명 3개 등 병기)’ 또는 QR코드나 홈페이지에 변경국가 원산지 정보 제공

※ 시행일 : 2016년 1월 중

유통·소비·생명산업

곤충 폐기명령에 대한 손실보상 이행절차 마련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따라 해당 곤충종의 폐기 및
사육·유통 제한이 결정되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



- 위해성 평가에 따라 폐기 및 유통·사육 제한이 결정되는 경우에 관련 보상 절차 시행
- 손실보상 범위, 보상의 대략적인 기준인 산정산식 및 산정방법을 정함

※ 시행일 : 2016년 2월(잠정, 개정안 입법예고 중)

유통·소비·생명산업



2016년 달라지는 농식품 제도 및 주요법령

차 례

농 촌

01.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시행	14
02. 창조농업 선도고교 및 농대 영농창업 특성화 사업 시행	15
03.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	16
04. 농어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17
05.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변경	18

농 업

06. 농업보조금 집행 및 관리 강화	20
07.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편의향상 및 공동경영주 도입	21
08.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22
09.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 도입	23
10. 신규 취농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지원 신설	24
1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환매 활성화 지원 강화	25
12. 농지 임대차 및 사용대차 종료명령 제도 도입	26
13.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27
14. 발농업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28
1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9



식량 · 농자재

- 16. 저소득계층 대상 복지용 쌀 정부양곡 판매가격 인하 32
- 17. 들녘경영체 지원 확대로 농가소득 다변화 33
- 18.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 의무화 34
- 19. 농업용 면세유 가격정보 공개 35

식품 · 수출

- 20.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료 원산지 인증제 도입 38
- 21. 소규모 탁주, 약주, 청주 제조면허 신설 39
- 22.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40

축산 · 동물

- 23.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농업분야 협력사업 실시 42
- 24.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상 확대 43
- 25.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44
- 26. 학교 우유급식 지원 대상 확대 45
- 27.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제도 개선 46
- 28. 가축질병 취약분야 관리 강화 47
- 29. 지자체별 동물위생시험소 설립 근거 마련 48
- 30. 동물장묘업 등록기준 등 개선 49
- 31. 광역축산 악취 환경 개선 지원 50

유통 · 소비 · 생명산업

- 3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52
- 33.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53
- 34.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54
- 35. 농식품 벤처·창업을 위한 기술·자금·판로·보육 원스톱지원 ... 55
- 36.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 도입 56
- 37. 곤충 폐기명령에 대한 손실보상 이행절차 마련 57



농 촌

01.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시행	14
02. 창조농업 선도고교 및 농대 영농창업 특성화 사업 시행	15
03.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	16
04. 농어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17
05.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변경	18

01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시행

농촌정책과 ☎ 044-201-1518

주요 내용

농산업분야의 우수한 청년인력의 창업 초기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농업인력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 청년 300명, 최대 2년까지 월80만원 지급



- 30대 이하 신규 농업인의 비중이 급감하고 있고, 농업분야 창업 후 2~3년간은 낮은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30대 이하 신규농업인 증감률 : '00년 29.2% → '10년 12.9%로 16.3% 감소
- 이에 농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후계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39세 이하의 영농 창업자(영농경력 3년 미만)에게 창업 초기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2016년에는 영농창업 프로그램 연수비용과 영농 창업 자금 등을 지원(최대 2년)하기 위한 각 도별 창업경진대회를 개최, 우수한 청년 300여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신규 창업농에 대한 정보교류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

- 추진배경 : 농산업 분야에 우수 청년 유입 촉진을 통한 농산업 인력기반 공고화
- 주요내용
 - ① 창업안정자금 지원 : 최대 2년간 월 80만원 지원
 - ② 청년 창업농 300명 선발을 위한 도별 창업경진대회 개최
 - ③ 신규창업농 정보교류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제2항(가족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 종사자의 육성), 제29조(벤처농어업 등의 육성) 등
- 시행일 : 2016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메인화면 우측하단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02 창조농업 선도고교 및 농대 영농창업 특성화 사업 시행

경영인력과 ☎ 044-201-1535

📖 주요 내용

미래 농업을 이끌 젊고 유능한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 **창조농업 선도고교** 및 **농대 영농창업 특성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농고·농대생들에 대한 취·창업 지원을 위해 농업계 고교는 산업연계 교육 사업을, 농대는 미래 전문농업경영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16년부터는 창업 중심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농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의지와 역량을 가진 **3개 학교**를 **창조농업 선도고교**로 선정하여 **현장실습 중심의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 농대는 **영농창업 특성화 대학 5개교**를 선정하여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청년 **창업농**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 창조농업 선도고교 및 농대 영농창업 특성화 사업 계획 >

- **추진배경** : 고교단계부터 현장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농업 직업교육 실시
- **주요내용**
 - ① **창조농업 선도고교(3개교)** : 기존 농업계 고등학교 중 의지와 역량을 가진 학교를 선정하고 현장실습 중심의 농업 직업교육을 실시
 - ② **농대 영농창업 특성화 사업(5개교)** : 기존 농대에 현장실습이 강화된 영농창업특별과정을 운영하여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청년 창업농 육성
-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농업·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 **시행일** : 2016년 7월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메인화면 우측하단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03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

지역개발과 ☎ 044-201-1554

📖 주요 내용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지원하는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 우수인력 및 자본이 유입되는 지역산업 육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 지자체(시·군) 대상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 6개 지구를 선정하여, 3년간 480억원(지구당 최대 8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 기업유치, 일자리 및 인력 양성, 생활여건 개선, 주거지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 향후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활기찬 농촌의 성공 모델을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 >

- 추진배경 : 지역 내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농촌 활력 제고
- 주요내용
 - ①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3년간)
 - ② 지원규모 : 6개 지구('16~'18)
 - ③ 사업비 : 1개 지구당 최대 80억원(국비 56억원)
 - ④ 지원조건 : 국비 70%, 지방비 30%
 - ⑤ '16년 예산(안) : 89억원(총사업비 480억원×국비70%×1년차26%)
- 관련법령 : 농어업인삶의질법 제29조, 제38조, 제39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52조부터 제71조
- 시행일 : 2016년 1월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메인화면 우측하단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04 농어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74

📖 주요 내용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이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시, 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를 이·통장 및 읍·면·동장에게 확인받았습니다.
-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 및 지역 주민 간 갈등 유발 등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에, '16년 1월부터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시 농어업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 관계기관 간(농식품부-해수부-각 공단)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연계하여,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증빙 서류제출 면제
- 그 외 농어업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시 기존 **이·통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읍·면·동장 확인으로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

- **추진배경** : 관계기관 간 자료연계 등 협업을 추진하여 민원인 불편 최소화
- **주요내용**
 - ①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시 농어업인 여부 확인절차 생략
 - ②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어업인의 경우 기존 이·통장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읍·면·동장의 확인으로 간소화
- **사업지침**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 **시행일** : 2016년 1월 중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메인화면 우측하단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05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지원조건 변경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78

주요 내용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지원 대상이 일부 조정되고, 상환 연체 시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 농어촌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나,
- 2016년 1학기 용자부터 소득 계층 간의 실질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농촌에 거주하는 **고소득 비농어업인** (소득 9~10분위)의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 연체 방지 및 상환 유도를 위해 2016년 1학기 대출분부터 **연체 기간에 따라 3%에서 9%까지 연체 이자가 부과**되고,
- 타 학자금 대출과 동일한 연체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현재 10개월인 신용 유의자 등록기준을 6개월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지원조건 변경 〉

- **추진배경** : 농어촌 학자금 지원대상에 대한 실질적 형평성 제고, 대출금 상환·관리 강화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주요내용**
 - ①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요건 변경
 - (현행) 소득 분위 관계없이 지원 → (변경) 소득 8분위까지만 지원
 - * 농촌거주 농업인 및 취약계층은 소득에 관계없이 현행대로 지원
 - ② 상환관리 강화를 위한 연체이자 도입
 - (현행) 연체이자 없음 → (변경) 연체이자 부과 : 3개월 이하(3%), 6개월 이하(6%), 6개월 초과(9%)
 - ③ 신용 유의자 등록기간 기준 변경
 - (현행) 연체 10개월 이상시 등록 → (변경) 연체 6개월 이상시 등록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3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 **시행일** : 2016년 1학기 대출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메인화면 우측하단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농업

06. 농업보조금 집행 및 관리 강화	20
07.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편의향상 및 공동경영주 도입	21
08.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22
09.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 도입	23
10. 신규 취농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지원 신설	24
1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환매 활성화 지원 강화	25
12. 농지 임대차 및 사용대차 종료명령 제도 도입	26
13.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27
14. 발농업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28
1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9

06 농업보조금 집행 및 관리 강화

창조행정담당관실 ☎ 044-201-1384

주요 내용

농업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를 강화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요인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직접 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상호 유착에 의한 사업비 부풀리기, 자부담 편취 등 보조금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16년부터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업체 선정 시, **입찰 대상이 되는 범위를 당초 5억원에서 2억원(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조사업까지 확대하여 운영** 계획입니다.
- 이 경우, 조달청이나 지자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관계기관 간(농식품부-해수부-각 공단)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연계하여,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증빙 서류제출 면제
- 또한, **보조금을 3억원 이상 지원받는 보조사업의 경우,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정산서류의 검증을 받도록** 하여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요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 농업보조금 집행 및 관리 강화 >

- **추진배경** : 농업보조금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
- **주요내용**
 - ① 보조사업 규모가 2억원(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 · 조달청에 위탁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사업 수행 업체 선정
 - ② 지원받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집행내역에 대해 전문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정산
 - ③ 사업 수행 업체 선정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제한
- **관련법령**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잠정)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07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편의 향상 및 공동경영주 도입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044-201-1410

📖 주요 내용

농업인들의 편의와 권익증진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간소화** 및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주로의 등록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항목을** 농업인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중요항목 위주로 대폭 축소**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작성 항목에서 제외하여 **중요항목 위주로 작성(140개→71개)** 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배우자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여 사회적 지위와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 또한 경영체 등록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농업인 자격 획득 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 민원처리기간 : (기존) 90일 → (직불·보조금 신청이 없는 경우) 30일로 단축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신청서 등 개선 〉

- **추진배경** : 농업인 신청서 작성 편의 향상 및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
- **주요내용**
 - ① 등록신청서 항목 : 140개 → 71개
 - ② 공동경영주 등록 신설(배우자인 농업인)
 - ③ 민원처리기간 단축(직불·보조금 신청이 없는 경우) : 90일 → 30일
-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시행일** : 2016년 2월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08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농업정책과 ☎ 044-201-1719

주요 내용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 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하고, 수입기여도 등 결정 시 농업인의 이익제기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 '16년부터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하여, FTA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보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 가격간 차액의 90%를 보전하였으나, '16년부터 보전비율이 95%로 상향됩니다.
* 기준가격 : 대상 품목의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5%
- 또한, 직불제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농업인의 이익제기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 투명하고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피해보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16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

- **추진배경** : 한·중 FTA 대책 및 여야정 합의사항('15.11.30) 추진
- **주요내용**
 - ① 보전비율 상향(90% → 95%)
 - ② 대상품목과 품목별 수입기여도에 대한 농업인의 이익제기 절차 신설
-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
- **시행일** : 2016년 5~6월(잠정, 개정안 준비중)*
* 보전비율 상향은 「FTA 농어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16년 상반기 중 개정안 제출·발의 및 국회 심의가 예상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09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제 도입

농지과 ☎ 044-201-1732

주요 내용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전용 허가 전까지 납부하도록 변경·시행하고 분할 납부 대상을 개인·단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16년 1월 21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허가 전까지 납부하도록 변경·시행**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는 부담금
- 앞으로는 **농지전용 허가전까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여야만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장기 체납에 따른 증가산금제를 도입** 하였습니다.
* 가산금(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0일 이내) :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
* 증가산금(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마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1000분의 12
- 아울러 그동안 공공기관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였으나, **부담금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개인, 단체 등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시행**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제 도입 >

- **추진배경** :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를 통한 부담금 납부 이행률 개선 및 체납 방지
- **주요내용**
 - ① 농지전용 허가전까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②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 비율 조정 및 증가산금제 도입
 - ③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대상을 개인, 단체 등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
- **관련법령** :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 **시행일** : 2016년 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10 신규 취농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지원 신설

농지과 ☎ 044-201-1738

주요 내용

2030세대, 창업농, 귀농인 등 취농인*이 농지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취농인 : 신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기술이나 경험이 없이 새로이 영농에 취농하는 경우, 실패시 위험부담이 큰 만큼 신규로 농업에 종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이에, 소규모 농지경작을 통해 **영농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1,000㎡(약 300평) 규모의 농지를 3~5년 기간 동안 임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임차료는 해당 지역의 평균임차료 수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임차기간 종료 후에는 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1회에 한해 재임차도 가능**합니다.
- 2016년도 시범사업으로 대상지역이 일부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필요 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신규 취농 농지지원 사업 〉

- **추진배경** : 2030세대, 창업농, 귀농인 등 취농인이 농지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으로 지원
- **주요내용**
 - ①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인 농지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 필지당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지
 - ② 지원상한 : 1,000㎡~1,982㎡ 범위 내
 - ③ 임차기간 : 3~5년 범위 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계약
- **관련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
- **시행일** : 2016년 1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신규취농 농지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1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환매활성화 지원 강화

농지과 ☎ 044-201-1738

📋 주요 내용

'16년부터 본격적인 환매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부분환매, 선납부, 분할납부 등 **환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그동안 전체 농지 등을 환매하도록 하던 것을, **매도 당시 전체 농지의 매도가격을 기준으로 그 매도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 면적에 대해서도 환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환매를 신청한 이후에만 일시 또는 3회 분납으로 환매대금을 상환하도록 하던 것을 **환매 신청 이전이라도 수시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아울러, 임차 기간 내에 3회에 걸쳐 환매자금을 분할 납부하던 것을 임차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선납비율을 4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분할납부시 고정금리 이자율은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변동금리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환매활성화 지원 강화 〉

- **추진배경** : 그동안 농업인이 환매자금 마련 등 환매준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해소하여 환매활성화를 통한 경영회생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①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고정 2.0%, 변동 1.8%)
 - ② 지원 금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환매요청 시 부분환매 허용
 - ③ 분할납부 기간연장(임대기간 종료 후 3년 분할 상환, 최초상환액 30% 이상)
 - ④ 환매자금 선납부 허용
- **관련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
- **시행일** : 2016년 1월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메인화면 우측하단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12 농지 임대차 및 사용대차 종료명령 제도 도입

농지과 ☎ 044-201-1735~6

📖 주요 내용

임대차 및 사용대차 종료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농지 이용률 제고 및 임대차·처분제도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적법한 농지 임대차가 있는 후에 임차인이 임차농지를 무단 휴경 할 경우 자기책임의 원칙 위배 소지 등으로 농지 임대인에게 농지처분을 부과할 수 없고,
- 무단 휴경 등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임대 농지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 이에,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휴경하는 경우** 등 임차 농지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군·구의 장이 그 계약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농지법을 개정('15.7.20 공포, '16.1.21 시행) 하여 농지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농지관리 강화 〉

- **추진배경** : 농지 이용률 제고 및 임대차·처분제도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농지법 제23조 제2항
- **시행일** : 2016년 1월 21일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13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농업금융정책과 ☎ 044-201-1760

주요 내용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6년 1월 1일부터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잔액기준 5.3조원)에 대해
대출금리가 인하됩니다.



- 대상자금 5.3조원에 대한 금리 인하로 **연간 약 314억원의 농업인 금융부담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 대출 농가당 약 48만원의 금융 부담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변경금리 적용 대상 사업 〉

기존금리	변경금리	대상사업(중장기 시설자금)
2.5%	2.0%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 농업종합자금, 원예시설현대화, 농지연금, 종축시설현대화, 식품외식종합자금, 도축가공업체지원, 시설원예효율화, 저온유통체계구축, 농식품 시설현대화, 말산업육성,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첨단온실신축지원, 사료산업종합자금
2.7%	2.0%	농촌주택개량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주택구입자금)

- 적용대상은 '16년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 **추진배경** :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

■ **주요내용**

융자사업 대출금리 인하 2.5~2.7% → 2.0%

*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 농업종합자금, 원예시설현대화, 농지연금, 종축시설현대화, 식품외식종합자금, 도축가공업체지원, 시설원예효율화, 저온유통체계구축, 농식품시설현대화, 말산업육성,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첨단온실신축지원, 사료산업종합자금(2.5% → 2%), 농촌주택개량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 중 주택구입자금(2.7% → 2.0%)

■ **관련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

■ **시행일** : 2016년 1월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메인화면 우측하단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14 밭농업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44-201-1778

주요 내용

밭농업 고정직불금이 2015년 ha당 25만원에서
2016년부터는 ha당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지목과 재배하는 작물(휴경포함)에 상관없이 실경작자에게 밭농업 고정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16년부터 26품목 밭직불금(ha당 40만원 지급)이 밭농업 고정직불금으로 통합됩니다.
- 또한, 전년도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의 기간 중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2015년과 같이 ha당 50만원의 논이모작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2016년도 밭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

- 추진배경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 주요내용
밭고정직불금 단가 인상(25만원/ha → 40만원/ha)
('15년 밭작물 26개 품목에 40만원/ha, 26개 품목 외 밭작물에 25만원/ha 지급 → 모든 밭작물에 40만원/ha 지급, 기존 논 이모작에 50만원/ha 지급)
- 관련법령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 시 행 일 : 2016년 1월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메인화면 우측하단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1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2

📖 주요 내용

'16년 1월 7일부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농작업 사고, 질병 등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농어업인의 안전재해에 대한 보다 확고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민간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을 '96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했습니다.
- 이에,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마련하여 **농어업 작업장에서의 안전재해 보장 강화 및 안전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에 대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 혜택**을 제공하여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 **추진배경** : 농어업인의 농작업 중 사고 등 안전재해에 대한 보다 확고한 안전망 설치 필요
- **주요내용**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장에서의 안전재해 보장 강화
 - 보험료의 국고지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보험금의 종류, 보험사업관리, 안전재해예방사업 등 규정
- **관련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시행일** : 2016년 1월 7일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식량 · 농자재

- 16. 저소득계층 대상 복지용 쌀 정부양곡 판매가격 인하 32
- 17. 들녘경영체 지원 확대로 농가소득 다변화 33
- 18.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 의무화 34
- 19. 농업용 면세유 가격정보 공개 35

16 저소득계층 대상 복지용 쌀 정부양곡 판매가격 인하

식량정책과 ☎ 044-201-1815

주요 내용

'1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20% 인하합니다.



- 공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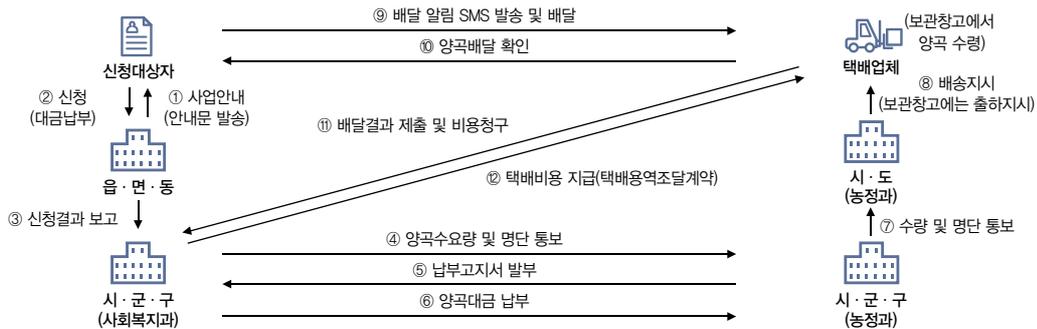
- 공급가격

(단위 : 원/20kg)

연도	판매 기준가격	복지용쌀 판매가격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지원액*	수급권자 등 부담가격
'15년(a)	44,410	44,410	22,210	22,200
'16년(b)	40,640	32,510	16,260	16,250
증감(a-b)	3,770	11,900	5,950	5,950

* 보건복지부

- 공급절차



< 복지용 쌀 정부양곡 판매가격 인하 >

- 추진배경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비용 부담완화
- 주요내용
판매가격 인하 : 기준가격 → 기준가격의 80%
- 관련법령 : 「양곡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시행일 : 2016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17 들녘경영체 지원 확대로 농가소득 다변화

식량산업과 ☎ 044-201-1837

주요 내용

공동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들녘경영체들이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다각화 예산을 신규로 지원합니다.



- 규모화·조직화 촉진을 위해 들녘경영체에 대한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영체별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다각화 모델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 이모작형, 경축순환형, 6차산업형 등 경영체 특성에 맞게 가공·유통까지 패키지로 지원(계획수립, 기반 정비 등)합니다.
* 경영체별로 총사업비 20억원을 총 3개년에 걸쳐 지원할 예정
- 또한, 들녘경영체에 대한 생력화 기술·신농법 교육을 강화하여 생산비 절감 효과를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공동 농작업에 의한 노동비 중심의 생산비 절감을 신기술·신농법에 따른 농자재 투입비용까지 확대 하겠습니다.

<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

- 추진배경 : 공동영농을 통해 발생한 유희자원(인력, 농지 등)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 주요내용
기존 들녘경영체 중 공동경영 수준이 높은 들녘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체별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모델 구축을 지원
- 관련예산 : 5,280백만원(전국 22개소)
- 시 행 일 : 2016년 1월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메인화면 우측하단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18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 의무화

농기자재정책팀 ☎ 044-201-1841

주요 내용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를 의무화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와의 구분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 농촌 고령화로 작동이 용이한 동력운반차 등의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농업인들이 구입하려는 기계가 농업용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 농업기계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 농기계구입 융자지원, 농업용 면세유류 이용 등이 불가능합니다.
* 4륜 오토바이(ATV)의 경우 농업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조·수입업자가 농업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
- 이에 농업인의 혼란을 줄이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loader, 2톤 미만), 굴삭기(1톤 미만)에 대해 농업용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농업기계의 제조·수입업자가 농업용 표시대상 농업기계에 농업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 의무화 >

- 추진배경 : 농업용 기계에 대한 농업인의 혼란 방지 및 알권리 보장
- 주요내용
 -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loader, 2톤 미만), 굴삭기(1톤 미만)에 대해 농업용 표시를 하여야 함
 - ② 대상 농업기계에 농업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련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 시 행 일 : 2016년 2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19 농업용 면세유 가격정보 공개

농기자재정책팀 ☎ 044-201-1841

📖 주요 내용

주유소 외벽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 표시가 추가되며,
오피넷(Opinet)을 통해 전국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이 공개됩니다.



- 지금까지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전 가격’과 ‘면세유 판매가격’만 표시되어 면세액이 얼마인지 농업인이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 올해부터는 주유소 외벽의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 표시를 추가하여 농업인들이 면세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16년 상반기부터는 모든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현재 '15.11.16일부터 면세유 가격정보 공개에 동의한 농협주유소(658개소)와 일반주유소(480개소)가 오피넷을 통해 면세유 판매가격을 공개 중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와 협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하여 '16년 상반기 중 모든 주유소 적용 예정

< 농업용 면세유 가격정보 공개 >

- **추진배경** : 면세유 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으로 판매가격 인하 기대
- **주요내용**
 - ① '16.1월부터 주유소 외벽의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 표시 추가
 - ② '16년 상반기까지 전국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15.11월부터 가격정보 공개에 동의한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 중)
- **관련법령** :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2조(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 및 설치 방법 등)
- **시행일** : 2016년 1월

🔍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 www.opinet.co.kr



식품 · 수출

20.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료 원산지 인증제 도입	38
21. 소규모 탁주, 약주, 청주 제조면허 신설	39
22.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40

20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제 도입

식품산업정책과 ☎ 044-201-2121

주요 내용

소비자의 원산지 신뢰도를 높이고,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연계강화를 위한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제가 시행됩니다.



-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제도는 차별화된 우수 프리미엄 시장 형성, 소비자 만족, 농업과 연계 및 식품·외식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 제조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95% 이상의 원료가 동일한 국가일 경우 원산지를 인증하고, 이를 제품, 포장, 메뉴판, 간판 등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범인증', '공청회', '지역별 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니,
- 원산지인증을 희망하거나 관심 있는 가공식품 생산자, 음식점 등 영업자, 관련 단체, 지자체 등에서는 적극 참여 바랍니다.

< 2016년도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제 도입 >

- 추진배경 : 원산지인증제 도입을 통한 소비자의 원산지 신뢰도 및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연계강화
- 주요내용
 - ① 가공식품 원료의 95%이상 또는 음식점 등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95%이상이 동일한 원산지일 경우 인증 절차를 통해 인증(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인증서 발급)
 - ② 첨부서류 : 공통서류(원료 구매 조달 실적 서류, 원료의 원산지 증명 서류 등), 가공식품(품목제조보고서), 음식점(주메뉴 및 부식류 일람표)
- 관련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동법 시행령(제31조~제32조) 및 시행규칙(제18조의3~제18조의8)
- 시 행 일 : 2015년 12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21 소규모 탁주, 약주, 청주 제조면허 신설

식품산업진흥과 ☎ 044-201-2136

📖 주요 내용

소규모의 제조시설을 갖춘 음식점에서 직접 제조한 탁주, 약주, 청주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면허가 신설됩니다.



- 하우스 맥주와 달리 전통 주종에 대해서는 음식점 등에서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 제조 면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금년부터는 1㎏이상 5㎏미만의 제조시설(발효조·제성조 용량)을 갖춘 식품접객업장에서 탁주, 약주, 청주도 직접 제조하여 소비자 및 다른 사업자의 음식점에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 5㎏ 이상의 제조시설을 갖춘 영업장은 일반적인 탁주, 약주, 청주 제조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일반적인 주류보다 경감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주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일반) 제조원가 + 이윤 / (소규모)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100분의 80

〈 소규모 탁주, 약주, 청주 제조면허 신설 〉

- 추진배경 : 전통 발효주 소비 활성화 및 다양한 제품 생산 유도
- 주요내용
 - ① 대상 주종: 탁주, 약주, 청주
 - ② 판매 범위: 자기 영업장 및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
 - ③ 시설 기준: 담금(발효)·제성조 1㎏ 이상 5㎏ 미만
- 관련법령 : 주세법 시행령 제4조(주류제조의 면허), 제4조의2(소규모주류제조자의 주류판매)
- 시 행 일 : 2016년 2월 1일(잠정)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메인화면 우측하단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22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검역정책과 ☎ 044-201-2074

주요 내용

'16부터 국산 쌀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 「한국산 쌀 중국 수출검역요건」 체결(15.10월) 및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시행(16.1월)



- 국산 쌀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양국간 합의된 식물검역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우선 우리나라 식물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으로 등록을 하고, **중국 측의 현지실사**를 받은 쌀 가공 공장에서 쌀을 가공·포장하여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 또한 수출 전 해충 방제를 위해 **중국 측과 합의한 메틸브로마이드(MB) 또는 에피훅스(PH3) 등 훈증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 우리나라 식물검역관이 실시하는 **수출검역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한국산 쌀 중국 수출 추진 내용 >

- **추진배경** : '09년 중국측에 국산 쌀 수입허용 요청하고, 협상 타결 지속 노력
- 「한국산 쌀 중국 수출검역요건」을 체결(15.10월)하고,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이 제정·시행(16.1월) 됨
- **주요내용**
 - ① 식물 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 등록 및 중국측 현지실사 실시
 - ② 수출 전 메틸브로마이드(MB) 또는 에피훅스(PH3)으로 훈증소독 실시
 - ③ 한국 검역관의 수출검역 및 합격증명서(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 제28조(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수출 식물등의 검역) 및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16.1월 제정·시행 예정)
- **시행일** : 2016년 1월 잠정 (* 중국측의 현지실사 결과처리 시기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www.qia.go.kr(알림마당 → 법령정보 → 고시)



축산 · 동물

23.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농업분야 협력사업 실시	42
24.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상 확대	43
25.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44
26. 학교 우유급식 지원 대상 확대	45
27.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제도 개선	46
28. 가축질병 취약분야 관리 강화	47
29. 지자체별 동물위생시험소 설립 근거 마련	48
30. 동물장묘업 등록기준 등 개선	49
31. 광역축산 악취 환경 개선 지원	50

23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농업분야 협력사업 실시

축산정책과 ☎ 044-201-2320

주요 내용

한·뉴질랜드 양국은 FTA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축산업 훈련비자 프로그램,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5개 농업협력사업을 실시합니다.



- 농고와 농업관련 대학 졸업 예정자(또는 졸업후 2년이내) 50명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현지에서 농축산업 분야의 교육(3개월)과 직무연수(9개월)가 가능한 비자발급을 지원합니다.
- 매년 최대 150명의 우리나라 농업인 자녀(중학생 100명, 고 1~2학년생 50명)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 농업 학과 졸업생 중 뉴질랜드 대학원 진학 희망자(박사과정 4명)를 대상으로 항공료·장학금·체재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질병위험 분석(6명), 산림연구 분야(1명) 전문가를 뉴질랜드 연구기관에 파견하여 훈련·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16년 한-뉴질랜드 FTA 협력사업 프로그램 >

■ **추진배경** : 뉴질랜드의 선진 농축산기술을 국내로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 자녀 영어연수 지원을 통한 농촌 생활여건 개선

■ **주요내용**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농축산업 훈련 비자	뉴질랜드 현지에서 농축수산업 분야의 교육(3개월) 및 직무연수(9개월)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는 50명에 대한 지원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농업인 자녀 중 초등 5학년~고등 2학년 학생 연간 150명을 대상으로 어학연수 지원(최대 8주)
한-뉴 농업협력장학금	수의과학, 산림 분야별 매년 최대 2명에게 뉴질랜드 내 대학원 장학금 지원(최대 3년)
농림 분야 전문가 훈련·연구협력	질병위험 분석(6명), 산림연구(1명) 분야 공무원을 뉴질랜드로 파견하여 훈련·연구를 지원(2주~6개월)
수의역학분야 공동워크숍	수의역학분야 국제 워크숍을 한·뉴 교대로 개최
비용부담	양국 정부가 50:50으로 부담(단, 농축산업 훈련비자 제외)

■ **관련법령** :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4장 농림수산협력

■ **시행일** : 2016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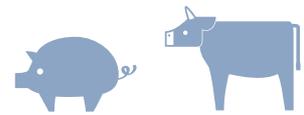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메인화면 우측하단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24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상 확대

축산정책과 ☎ 044-201-2317

주요 내용

축산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등록대상**을 '16년 2월 23일부터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16년 2월 23일부터 **소·돼지·닭·오리**의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기존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는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며,
- **1년 이내**(2017년 2월 22일까지)에 축산시설과 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6년 4월 13일부터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중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10㎡이상 15㎡미만인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하고,
- '16년 10월 13일까지 종계·종오리업·부화업·닭(산란계·육계)·오리 사육업 허가농가는 방역·소독·장비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 개선 >

■ **추진배경** :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 축산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 **주요내용**

2016년 2월 23일부터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가축사육면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축종	<'15. 2. 22 이전> ~전업규모까지	<'15. 2. 23 이후> ~준전업규모까지	<'16. 2. 23 이후> ~소규모까지
소	600㎡ 초과	300㎡ 초과	50㎡ 초과
돼지	1,000㎡ 초과	500㎡ 초과	50㎡ 초과
닭	1,400㎡ 초과	950㎡ 초과	50㎡ 초과
오리	1,300㎡ 초과	800㎡ 초과	50㎡ 초과

■ **관련법령** :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 **시행일** : 2016년 2월 23일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25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축산정책과 ☎ 044-201-2317

주요 내용

축산관련 종사자들의 편의 제공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 교육프로그램’이
상용화됩니다.



- 구제역, AI 등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고, 축산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상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담당공무원, 농축협 등 195개 교육 운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고,
- '15년 12월에는 100여명의 축산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하여, 정식 운영 전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컴퓨터 사용미숙자를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휴일 이용자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및 학습 상담**을 실시하는 등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추진배경** : 집합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축산 종사자 편의 제공 확대
- **주요내용**
 - ① 기존 집합 교육 정보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구현
 - ②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을 통한 상시 교육이 가능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 축산법 제33조의 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 **시행일** : 2016년 1월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홈페이지 www.farmedu.kr

26 학교 우유급식 지원 대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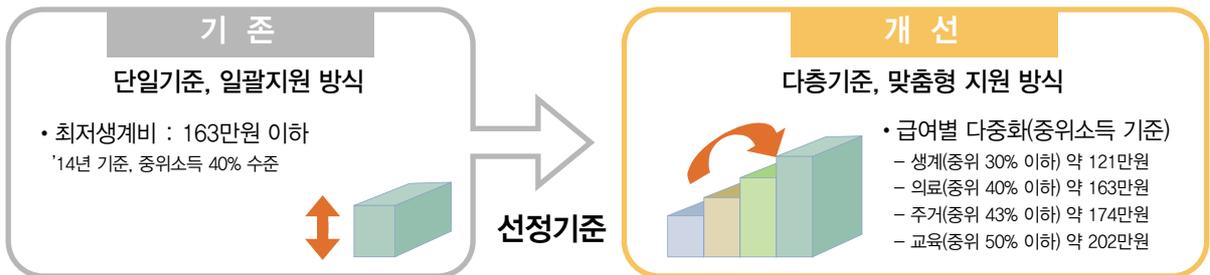
축산경영과 ☎ 044-201-2340

주요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학교 우유급식 초·중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15.7월)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당초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변경, 확대**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16년에는 **초·중교생**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인 **34만명 수준**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16년도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 >

- **추진배경**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하여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복지 증진을 추구하고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
- **주요내용**
 (당초)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기타 시도에서 선정한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교생 →
 (2016년 추가) 초·중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지원
* 2016년 지원 예산 : 55,780백만원(국비 33,468, 지방비 22,312)
- **사업지침** :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 **시행일** : 2016년 1월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메인화면 우측하단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27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제도 개선

축산경영과 ☎ 044-201-2336

주요 내용

각종 FTA 체결에 따른 축산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조건, 내용, 규모 등이 대폭 개선됩니다.



- 젊은 축산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대상자의 범위를 농장 실무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 규모화에 따른 축산농가 당 가축 사육 마리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전업농 등의 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증축 불허 규정 등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축종에 말을 포함하고, 축산분야에 ICT의 확산을 위하여 ICT 확산사업 대상을 상반기에는 낙농, 하반기에는 한우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낮추고(30% → 20%), 융자 비율은 높였으며(50% → 60%), 상환기간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 개선 >

- 추진배경 : FTA에 따른 개방 확대 및 국내 축산기반 변화에 따른 축산업 육성방향을 전환하고, 축산업 경쟁력 조기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필요
- 주요내용
 - ① (지원조건) (당초) 보조 30%, 융자 50%(3년 거치 5년 상환) 자부담 20% → ('16) 보조 20%, 융자 60%(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 ② (사업대상) (당초) '14.12.31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 후 가축을 사육중인 농가 및 법인 → ('16 추가) 농장 실무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
 - ③ (지원대상, 지원 범위 등)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시행지침 참조
- 사업지침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시행지침
- 시 행 일 : 2016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메인화면 우측하단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28 가축질병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방역총괄과 ☎ 044-201-2360

📖 주요 내용

구제역 등 가축질병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15년 12월 23일 개정·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16년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 구제역, 시 등 주요 가축질병이 발생한 지역과 철새군집지 인근 등을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검사·예찰·시설 등의 기준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 축산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벌칙 규정을 강화하여 농가의 차단방역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 차단방역 기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기준을 구체화하고 질병관리 우수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경감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가축전염병 미신고시 벌칙금을 종전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독시설 미설치, 백신 미접종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종전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 그밖에도 GPS 장착 대상 축산차량을 확대하고, 축산농가 방역기준 마련 및 계열화 사업자에게 방역 책임을 부과하는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시행 >

- 추진배경 : 구제역 등 가축질병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와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의식을 개선
- 주요내용
 - ①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관리(신설)
 - ② 벌칙(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과태료(5백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상향
 - ③ 축산차량 GPS 장착 확대(조사료, 쌀겨, 톱밥, 깔짚 등 운반차량, 2016년 3월 23일까지 의무 등록) 등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등
- 시 행 일 : 2015년 12월 23일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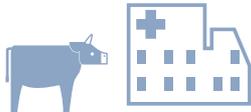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29 지자체별 동물위생시험소 설립 근거 마련

방역총괄과 ☎ 044-201-2360

주요 내용

지방의 가축방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장비 확충이 가능하도록 「동물위생시험소법」이 금년 6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 2000년부터 지속된 구제역, AI 등의 발생과 외국으로부터 다양한 질병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병 발생 예방과 효율적인 방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특히 **지방의 경우** 가축방역기관 운영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수의 전문조직 부족으로 **방역시스템 구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광역 지자체(시·도)에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구역 내에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시·도 조례로 동물위생시험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진단·검사·연구** 뿐만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동물위생시험소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지자체에 동물위생시험소 설치를 통해 동물·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동물 위생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
- **주요내용**
 -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동물위생시험소 설치 가능
 - ② 시험소에서는 가축질병의 방역·검사·연구 및 축산물의 검사, 위생관리 등의 업무 수행
- **관련법령** : 동물위생시험소법
- **시행일** : 2016년 6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30 동물장묘업 등록기준 등 개선

방역관리과 ☎ 044-201-2383

📖 주요 내용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용받던 **동물장묘업**이 '16년부터는 「**동물보호법**」에 **등록기준이 신설**되어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지금까지 동물장묘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처리 시설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 '16년 1월 21일부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등록기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제출이 폐지**되고, **동물 화장시설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검사**가 생략되는 등 규제가 완화됩니다.
- 또한, 동물 건조장 시설의 정기검사도 3개월 1회에서 6개월 1회로 검사주기가 완화됩니다.

〈 동물장묘업 등록기준 개선 〉

- **추진배경** : 폐기물관리법 개정(2016.1.21. 시행)됨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가 폐기물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포함
- **주요내용**
 -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폐지
 - ② 동물화장시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검사 제외
 - ③ 동물건조장시설 정기검사 주기 완화(3개월 1회 → 6개월 1회)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 **시행일** : 2016년 1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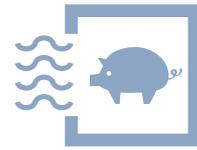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31 광역축산 악취 환경 개선 지원

친환경축산팀 ☎ 044-201-2376

주요 내용

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6년부터 **광역축산 악취 환경개선 사업**이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는 악취 저감 및 분뇨 자원화를 위해 개별시설 및 공동자원화 시설 등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 하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대단위 축산단지 등의 분뇨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특정지역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조성하는데 자금을 지원**(3개소, 개소당 40억원 규모)할 예정입니다.
- 또한, 개별 축산농가도 악취 저감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시설 보완 및 처리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광역축산 악취 환경 개선 >

- **추진배경**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 **주요내용**
 - ① 광역축산악취환경개선 : 40억원 내외/3개소(시·도)
 - ② 지자체는 가축분뇨의 공동처리 의무, (1순위) 악취저감, (2순위) 퇴액비, (3순위)정화조 개보수, (4순위) 액비저장조, (5순위) 기계·장비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음
- **사업지침**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
- **시행일** : 2016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메인화면 우측하단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유통 · 소비 · 생명산업

- 3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52
- 33.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53
- 34.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54
- 35. 농식품 벤처·창업을 위한 기술·자금·판로·보육 원스톱지원 ... 55
- 36.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 도입 56
- 37. 곤충 폐기명령에 대한 손실보상 이행절차 마련 57

3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유통정책과 ☎ 044-201-2217

📖 주요 내용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6년 6월부터 제정·시행됩니다.



- 이 법을 근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및 우수사례 **홍보·포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되고,
- **유사 직매장의 난립을 방지**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는 공인된 직매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게 됩니다.
-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고, **농가는 다양한 판로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되어, **지역 농업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 **추진배경**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내용**
 - 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행
 - ②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시행
- **관련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시행일** : 2016년 6월 23일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33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식생활소비정책과 ☎ 044-201-2276

주요 내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16년 1월부터 개정·시행됩니다.

* 다만, '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원산지 표시기준과 방법으로서의 표시도 허용



- **농수산물 가공품의 사용** 원료 원산지 표시수가 **2개에서 3개(순위)로 확대**되어, 원산지 정보 제공 범위가 커집니다.
 - *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변경이 빈번한 경우 예외표시인 “수입산”을 ‘외국산(국가명 3개 등 병기)’로 표시하거나 ‘외국산(원산지변경 정보 별도표시)’로 표시하고 QR코드나 홈페이지에 변경국가 원산지 정보 제공 가능
-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는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되어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 **쌀(밥, 죽, 누룽지로 제공), 콩(두부, 콩국수, 콩비지로 제공)**을 제외한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리용도 구분 없이 **모든 조리용도**로 제공된 것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음식점**의 원산지표시판도 게시판 옆·아래나 주출입구 정면에 부착 또는 게시하게 됩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개정·시행 >

- **추진배경** : 농업인 소득증대 및 국민의 건강한 생활 도모
- **주요내용**
 - ①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배합비율에 따라 3순위 원료까지 표시
 - ②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 추가: 콩(두부, 콩국수, 콩비지로 제공시), 오징어, 꽃게, 참조기
 - ③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조리용도 확대: 쌀(밥 → 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축산물·수산물(특정 조리용도 → 모든 조리용도)
 - ④ 음식점의 원산지표시판 게시위치 명확화(잘 보이는 곳 → 주출입구 정면)
 - ⑤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변경이 빈번한 경우 예외표시인 “수입산”을 ‘외국산(국가명 3개 등 병기)’ 또는 QR코드나 홈페이지에 변경국가 원산지 정보 제공
- **관련법령**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1제3호
- **시행일** : 2016년 1월 중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34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원예산업과 ☎ 044-201-2240

주요 내용

차 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됩니다.



- 차산업 육성과 차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차산업의 기술 개발 및 진흥 등을 위한 법으로,
- 이 법에 따라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위해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 차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차 생산자로 하여금 차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차의 품질 등의 표시 기준을 설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 추진배경 : 농업인 소득증대 및 국민의 건강한 생활 도모
- 주요내용
 - ①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 ② 차의 품질 등의 표시제 시행
- 관련법령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시 행 일 : 2016년 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35 농식품 벤처 · 창업을 위한 기술 · 자금 · 판로 · 보육 원스톱지원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2

📖 주요 내용

권역별 농식품 벤처 · 창업지원 특화센터를 설치하여
농식품 벤처 · 창업의 기술 · 자금 · 판로지원을 위한
창업 초기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금년부터는 창업을 위한 기술(R&D)이나 자금, 판로 지원에 관한 정보를 농식품 벤처 · 창업지원 특화센터 한 곳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전문가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마케팅, 경영, 회계 등 창업 컨설팅을 해주는 창업 보육을 지원하고, 창업자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비용 지원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투 · 용자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제작된 시제품은 테스트숍 형태의 판매관을 통해 시장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농식품 전문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16년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

- 추진배경 : 농식품 벤처 · 창업지원 특화센터 설치를 통한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① 기술가치평가 지원(건당 최대 1천만원, 자부담 20%)
 - ② 농촌현장 창업 보육 지원(전문가 컨설팅비 지원, 최대 1천만원, 자부담 20%)
 - ③ 시제품 판매관 운영
 - ④ 농식품 전문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운영
- 관련법령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 시 행 일 : 2016년 상반기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메인화면 우측하단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36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 도입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7

주요 내용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는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이내)을 활용하여,
-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친환경농업인은 '자조금단체 회원 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 제출 및 자조금 납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 도입 >

- 추진배경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친환경농산업 육성
- 주요내용
 - ① 친환경농업인 등은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 가입신청 및 납부 동의서 제출 (2016.1.4~29, 거주 주소지 소재 읍·면·동)
 - ② 1천㎡이상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조합은 자조금을 납부해야함(3~5천원/1천㎡)
* 단, 농업용 재배시설은 330㎡ 이상인 자를 포함하되 조사료는 제외
- 관련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등
- 시 행 일 : 2016년 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37 곤충 폐기명령에 대한 손실보상 이행절차 마련

종자생명산업과 ☎ 044-201-2475

📖 주요 내용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따라 해당 곤충종의 폐기 및 사육·유통 제한이 결정되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됩니다.



- 곤충의 위해성 평가는 사람의 생명·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평가로 위해성 1급(곤충 폐기 및 사육 불가) 및 위해성 2급(사육·유통제한), 위해성 없음으로 나누어집니다.
- 손실을 입은 농업인이 해당 지자체에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 손실보상 금액을 60일 이내에 통지받게 됩니다.
 - * 위해성 1급 : 폐기된 곤충의 시가, 부수적 손실, 폐기비용, 방제비 및 영업손실을 포괄하여 산정
 - * 위해성 2급 : 사육제한을 위한 시설비, 유통 제한 등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포함하여 산정
- 최근 외래생물 사육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 각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산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곤충 사육의 위해성 평가는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며,
- 농업인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절차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여 산업 곤충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곤충 폐기명령에 대한 손실보상 이행절차 마련 〉

- 추진배경 : 곤충의 위해성평가 결과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주요내용
 - ① 위해성 평가에 따라 폐기 및 유통·사육 제한이 결정되는 경우에 관련 보상 절차 시행
 - ② 손실보상 범위, 보상의 대략적인 기준인 산정산식 및 산정방법을 정함
- 관련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 시 행 일 : 2016년 2월(잠정, 개정안 입법예고 중)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